

공공기관 SW사업 법제도 준수사항 및 지원안내

2014. 2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01 법령 준수 관리감독 시행 안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조의8” 및 “소프트웨어사업 정보관리 및 관리감독 전문기관 지정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48호, 2013.9.6)”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감독 등을 위해 발주자가 공개한 사전규격서(RFI) 및 제안요청서(RFP)에 대해서 법령 준수여부를 검토하여 미준수 사항 발견 시 해당기관에 법제도 준수를 권고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SW제도적용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4(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감독 등)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법령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3.23, 타법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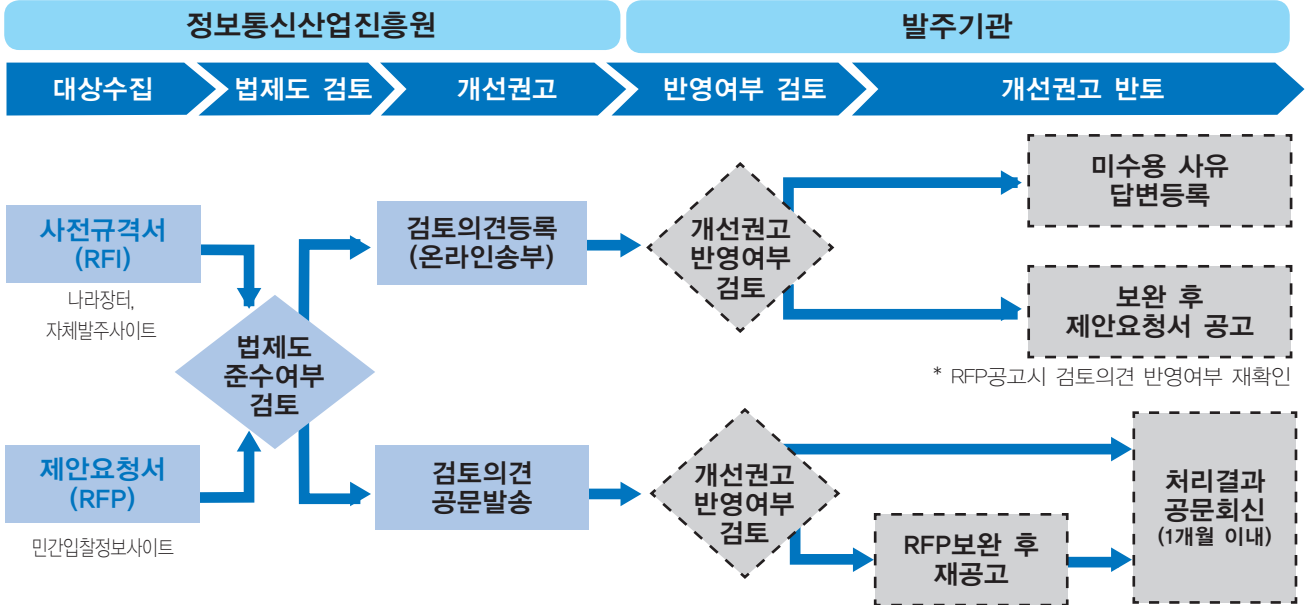
- 제17조의8(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4조의4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감독 및 개선 권고를 위한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감독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4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감독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국가기관등의 장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법령의 준수 여부 관리·감독
 2.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분석
 3. 법 제24조의4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개선권고 업무의 지원 및 그 결과의 접수·처리 업무의 지원

소프트웨어사업 정보관리 및 관리감독 전문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13.9.6.]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48호, 2013.9.6., 일부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5항 및 제2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및 제17조의8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정보의 수집·분석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감독 등을 위한 "관리감독 전문기관"으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각각 지정한다.

SW제도적용 모니터링 프로세스



점검대상 법제도 항목 ('13년 현재)

법제도 항목	관련 법령
1. 대기업 참여하한	SW산업 진흥법 제24조2(중소SW사업자의 참여지원) 등 관련법령
2. 일괄발주 시 각 사업금액 적용	SW산업 진흥법 제24조2(중소SW사업자의 참여지원) 제2항
3. 대기업 공동 수급제한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발주준비)
4.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상세화 ('13년부터 적용)	SW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제3항 등 관련법령
5.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3(하도급의 승인) 등 관련법령
6.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이내	SW산업 진흥법 제20조4(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등 관련법령
7. SW분리발주	SW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제2항 등 관련법령
8.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우선적용	SW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제1항
9. 기술능력평가 비중 9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 (평가배점)
10. SW기술성 평가기준 준용	SW기술성평가기준(고시)
11.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1조(작업장소 등) 등 관련법령
12. 계약목적물의 지재권 귀속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임치) 등 관련법령
13. 제안서 보상 명시	SW산업 진흥법 제21조(SW사업 제안서 보상) 등 관련법령
14. 무상유지보수 용어금지 ('13년부터 적용)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4,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등 관련법령
15. 특정규격 명시금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
16. 적정기간 산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소프트웨어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의2

02 법령별 준수 가이드

1) 대기업 참여하한

- 개요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하한을 적용한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7의2부터 제17의6까지의 규정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52호, 2013.9.6)
- 적용대상 :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40억원 이상

-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의 '중견기업' 이 되지 5년 이내의 경우,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 *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경우 '13.1.1부터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전면 제한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의6)

- 예외사항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의2제2항 각호
 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2.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조달청 통한 발주사업에 한함)
 3. 국방·외교·치안·전력, 그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에 따라 국가안보성과 대기업참여불가피성 해당 여부를 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제24조의2(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① 정부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2.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국가기관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3. 국방·외교·치안·전력(專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제24조의2제3항 시행일: 2013.1.1]
-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그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범위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발주기관 준수사항 : 제안요청서 작성 시 대기업 참여제한제 적용 명시

● 유의사항

- ①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 상출제기업집단소속회사는 그 사업의 계약체결 당시 기준으로 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에 제안요청서 등에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상출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을 명기하여 계약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함.
- ② SW사업 운영과 유지관리를 묶어 발주한 사업인 경우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함.
- ③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의 경우 단순물품의 구매는 대기업 하도급 참여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용역의 하도급으로 대기업참여는 인정되지 않음.
- ④ 대기업참여가능 대상업체는 SW사업자신고 확인서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으로 확인해야 함.

● 제안요청서(RFP) 작성 사례

- 사업예산 규모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명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52호, 2013.9.6) 준수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40억원 이상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의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중견기업
 *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경우 '13.1부터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전면 제한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의6)

- 사업예산 규모가 20억 미만 사업

사업예산 규모가 20억 미만 사업은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 임을 명기

-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 총예산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함.

- 사업예산 규모가 20억 이상 40억 미만 사업

사업예산 규모가 20억 이상 40억 미만 사업은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 임을 명기

- 총예산 4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견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 추정가격 4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 사업예산 규모가 40억 이상 80억 미만 사업

사업금액에 따라 '일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 자격이 제한됨' 을 명기

- 총예산 8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참여 불가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제2항, 제3항 및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52호에 따라 매출액 8,000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 사업예산 규모가 80억 이상 사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자격이 제한됨' 을 명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사업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의 각호에 따라 예외사업을 적용할 경우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임' 을 명기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1호)

○ 입찰참가자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제3항 및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52호에 따라 대기업(상출제소속회사 포함)의 참여가 제한됨.

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자신이 구축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 가능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3호)

○ 입찰참가자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 및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미래창조과학부고시)에 의거하여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함.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예외사업을 적용할 경우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미래창조과학부고시)"에 제시된 미래창조과학부 인정절차 참고

2) 일괄발주 시 각 사업금액 적용

- **개요** : 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 각 단위사업의 금액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가능한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한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
- 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을 기준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
- 적용대상 :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

- **일괄발주 사업**

-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묶어 일괄발주하는 사업
- 유지관리사업에서 2개 이상의 구축사업을 묶어 일괄발주하는 사업
-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장기계속계약에서 2개 연도 이상의 사업을 묶어 일괄발주하는 사업 등

- **발주기관 준수사항** : 당초 각각의 SW사업을 하나로 묶어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단위사업 금액의 하한을 기준으로 대기업 참여하한 적용, 미적용 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4항)

- **유의사항**

- ① SW사업에서 일괄발주는 사업금액을 높여 중소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어 입법취지상 각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하한을 적용함.
 - 이때 각 사업금액의 기준은 일괄발주에 포함된 사업중 가장 낮은 사업금액을 말함.
- ② 국가기관등은 일괄발주 시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한을 적용하고 대기업 참여하한 관련 조항을 입찰공고문이나 제안요청서에 명시해야 함.
- ③ 장기계속계약으로 일괄발주하는 사업의 경우 당해 연도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대기업참여 하한을 적용해야 함.

- **제안요청서(RFP) 작성 사례**

- 입찰참가자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가장 낮은 단위사업의 금액을 기준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함.

- 입찰참가자격

본 사업은 2개 연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당해 연도 사업의 금액을 기준으로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함.

3)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 개요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대기업 중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체 참여를 제한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16호) 제4조
- 적용대상 :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가능한 소프트웨어사업

- 발주기관 준수사항: 제안요청서 작성 시 대기업참여를 허용할 경우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명기

-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16호, 2014.2.14., 일부개정)

제4조(발주준비) ③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에서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요건 등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안요청서(RFP) 작성 사례

- 입찰참가자격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16호) 제4조에 따라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군의 공동수급방식 입찰 참여를 제한함.

4)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상세화

- **개요 : 제안요청서에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16호)제4조 동고시 제13조에 따른 'SW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 참조
- 적용대상 : 소프트웨어사업

- **발주기관 준수사항 : 제안요청서 작성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업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분석하여 명기**

-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계약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분석·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기획·예산편성·발주 및 계약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작성·제안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계약서 또는 이행계획서에 기초하여 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대규모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요구사항 명확화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그 요구사항 작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16호, 2014.2.14., 일부개정)

제4조(발주준비)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별표의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이하 “적용기준”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에 필요한 개념을 정의하고, 요구사항을 상세화하여 발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요구사항 상세화 대상 SW사업**

SW개발사업, 시스템운용환경 구축사업, 유지관리 사업,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컨설팅 사업 포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사업 등

● **SW사업유형별 상세요구사항 분류 가이드**

사업유형	요구사항 분류
SW개발	① 시스템 장비 구성 ② 기능 ③ 성능 ④ 인터페이스 ⑤ 데이터 ⑥ 테스트 ⑦ 보안 ⑧ 품질 ⑨ 제약사항 ⑩ 프로젝트 관리 ⑪ 프로젝트 지원 등
시스템운용환경 구축	① 시스템 장비 구성 ② 기능 ③ 성능 ④ 인터페이스 ⑤ 데이터 ⑥ 테스트 ⑦ 보안 ⑧ 품질 ⑨ 제약사항 ⑩ 프로젝트 관리 ⑪ 프로젝트 지원 등 (② 기능 ④ 인터페이스 ⑤ 데이터 요구사항은 선택사항이므로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선별하여 적용할 수 있음.)
유지관리	① 유지관리 수행 ② 유지관리 인력 ③ 보안 ④ 품질 ⑤ 제약사항 ⑥ 프로젝트 관리 ⑦ 프로젝트 지원 등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컨설팅 포함)	① 컨설팅 ② 제약사항 ③ 프로젝트 관리 ④ 프로젝트 지원 등
DB구축 또는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① DB구축 또는 콘텐츠개발 ② 데이터 ③ 테스트 ④ 보안 ⑤ 품질 ⑥ 제약사항 ⑦ 프로젝트 관리 ⑧ 프로젝트 지원 등 (② 데이터 요구사항은 ① DB구축 또는 콘텐츠개발 요구사항에 포함할 수 있음.)

단, 요구사항 분류기준은 개별 사업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제안요청서(RFP) 작성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의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

요구사항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예시 : 기능요구사항 - OOX)
요구사항 명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산출정보		(해당시)
관련 요구사항		(해당시)
요구사항 출처		(제안요청서에는 명시하지 않음)

* 요구사항 분석·적용은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 참조

5)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 **개요** : (원)도급자와 (재)하도급자간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자의 사업수행능력과 계약방식 등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하도급계약을 사전에 승인한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200호)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16호) 제8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7조(하도급 승인 신청)·제38조(하도급 승인)
- ※ 제외가능 사업 : 단순물품(HW를 포함)의 구매·설치 용역·유지관리, 단순 조사업무/외부자문, 국가기관 등에 등록된 상용SW 구매·설치 용역·유지관리

- **발주기관 준수사항** : 제안요청서 작성 시 반드시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 여부를 명시하고 사업 관리 중 하도급이 발생할 경우 관련 제도를 준수

● 유의사항

- ① 제안요청서상에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제안요청서에 하도급 불허라는 조항을 명시하면, 하도급 계약 사전 승인이라는 문구 명기는 불필요 함.

- ② 발주기관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사실이 있는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그 사용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작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 ③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확인)에 따라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 확인해야 함.

- 계약상대방은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통보
- 발주기관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제출받아 지급내역과 일치여부를 확인

- ④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의 경우 단순물품의 구매는 대기업 하도급 참여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용역의 하도급으로 대기업참여는 인정되지 않음.

● 제안요청서(RFP) 작성 사례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200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하도급의 승인) ①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①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하여 서면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하도급 등의 승인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하도급 등의 승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14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하도급 등의 승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게 하도급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승인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승인받은 자로 하여금 별지 제11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그 준수여부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2항에 따라 승인한 대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200호, 2013.12.31., 일부개정)

제4조(적정성 판단기준의 공시 등)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입찰 공고할 경우 제안요청서에 하도급 계약 승인과 관련된 절차와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승인 대상의 제외) ①하도급 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단순 물품(하드웨어를 포함한다)의 구매·설치 용역·유지보수
- 2. 단순 조사업무 또는 외부자문
-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가격 정보가 공개된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용역·유지관리(별도의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평가시 제안서에 포함된 하도급 예정 계약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거쳐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이 최종 체결된 경우 그 하도급 계약은 이 기준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때 하도급 계약금액의 세부 산출내역서는 계약 체결시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적정성 판단)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이 기준 별표 1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 ②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자에게 이 기준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자기평가표 및 해당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당해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 ④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기준 별표 1의 세부 판단항목을 추가 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배점한도를 가감조정 할 수 있다.

6)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이내

- **개요**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를 책임진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4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56호) 제58조

- **발주기관 준수사항** : 제안요청서 작성 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 이내로 명시하고 사업관리 시 준수

- **유의사항**

- ① 2012년7월19일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제4항의 신설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이나 상용SW 유지 관리에 대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함.

- 따라서, 대부분의 SW사업이 하자담보책임기간내의 하자보수이외에 기능개선이나 기술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상유지관리계약을 인수와 동시에 체결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미리 유지관리사업 입찰공고를 본 구축사업이전에 추진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인수직후에 유지관리입찰공고를 할 경우 계약 시까지 기능개선 등의 유지관리비용을 본 사업 구축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함.

- ② 상용SW에 대한 유지관리계약도 상기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 **제안요청서(RFP) 작성 사례**

- **SW사업으로만 구성된 사업**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1년간 혹은 1년 이내로 명기

- 하자보수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SW와 다른 사업이 혼재된 사업**

SW사업에 한해 하자보수 책임기간 1년간 혹은 1년 이내로 명기

- 하자보수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7) SW분리발주

- **개요 : 소프트웨어 도입이 포함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도입만을 별도 분리하여 발주, 평가, 계약, 사업관리 등을 실시한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제6항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4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7조
-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84호, 2013.12.18)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16호)제4조
- 적용대상 : 총 사업규모 7억원 이상사업(지자체는 5억원 이상) 중 5천만원 이상 국가인증*
SW도입사업 (국가인증 : GS, 행정업무용, 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NEP, NET)
- 예외사항 : 분리발주로 인해 현저한 비용상승, 시스템 통합불가능, 현저한 사업기간 지연으로 미적용시
에는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별지서식의 제외사유서 명시

-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의 직접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소프트웨어사업 자에게 매년 공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43호, 2013.9.6., 일부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중 총 사업 규모가 7억원 이상(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억원 이상으로 한다)인 사업에서 사용되는 5천만원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 대상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GS인증) 제품
2. 「전자정부법」 제50조에 따른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제품
3.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8조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제품 및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제품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인증(NEP) 제품
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인증(NET) 제품

비고 1. 총 사업규모 또는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소프트웨어 1개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동일 소프트웨어의 다량 구매로 총 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한다.

3. 본문의 총 사업 규모 미만이거나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 또는 본문의 각 호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제품인 경우라도 분리발주 할 수 있다.

4. 국가기관등의 장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구매하여야 한다.

5. 분리발주로 인하여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되거나,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한 지연이 우려되는 등의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별지 서식에 의한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6. 국가기관등의 장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계약 현황 등을 같은 법 제14조제2항의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RFP) 작성 사례

<통합발주사업 제안요청서 명시>

○ SW분리발주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84호, 2013.12.18)에 따라 발주 기관에서 별도로 SW분리발주를 통하여 SW 000제품을 구매 후 선정된 제안사에 제공할 계획임.

- SW분리발주 통해 도입할 SW내역

SW제품	규격	수량	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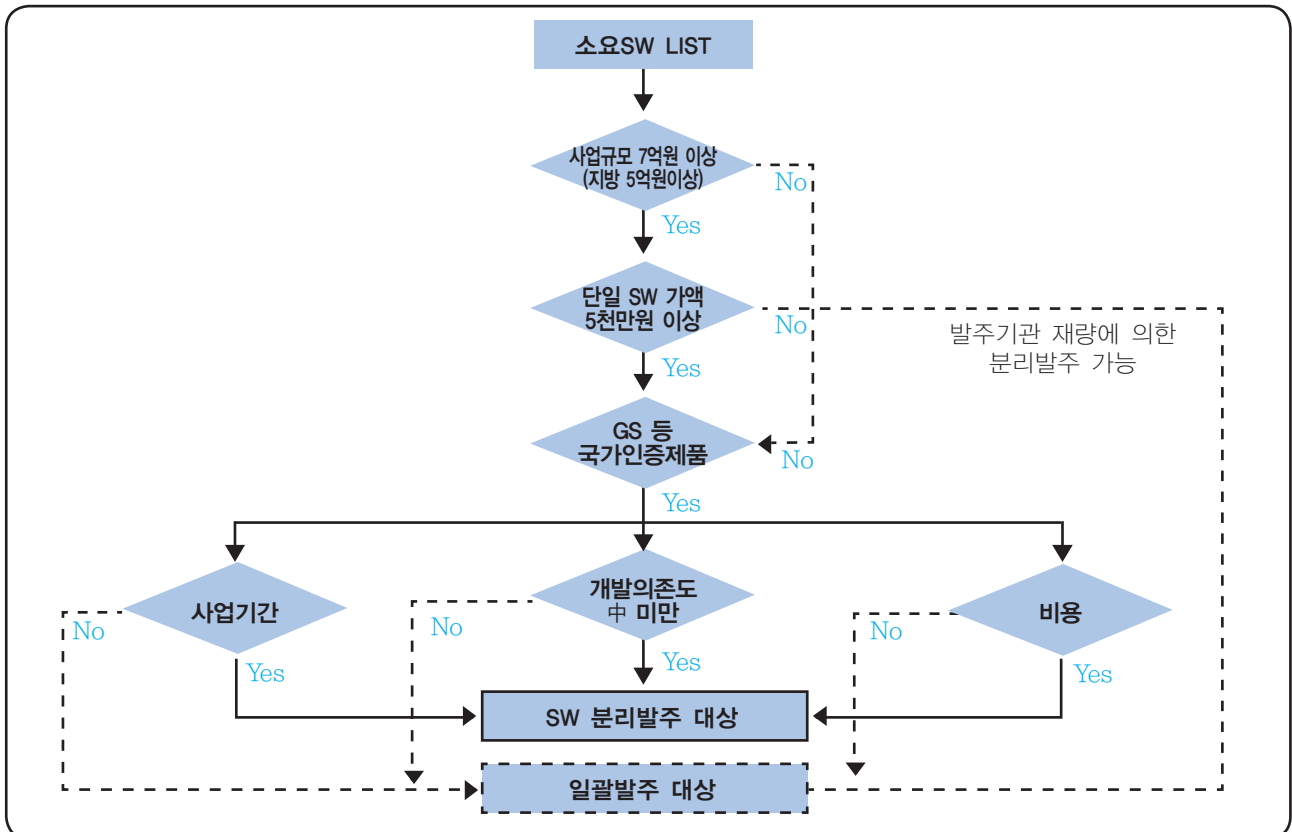
※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SW분리발주 SW도입시점에 "상호협약계약서", "조정사항 이행 협약서",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를 제출하여야 함

[별지서식]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

번호	소프트웨어 품목	제외사유	비고
1	ESB/ESB Adapter	SW커스터마이징 및 최적화, SI사업자의 인터페이스 기술지원 등이 중요한 제품임	
2			
3			

● 분리발주 대상 SW선정 절차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우선적용

- 개요 :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가장 유리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사업 등 지식기반사업의 경우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1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각 항 및 제43조의2제1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62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안전행정부고시 제2013-36호) 제18조
- 적용대상 : 소프트웨어사업 등 지식기반사업 전체

- 발주기관 준수사항 : 제안요청서 작성 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을 명시
- 법적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4조 내용동일)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RFP) 작성 사례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시 추가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항목

협상적격자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인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을 명시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인 경우 **기술과 가격점수 합산의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을 명시한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62호) 제8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3호, 2014.2.5) 제5장
- 적용대상 :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적용한 사업

9) 기술능력 평가 비중 90% (기술/가격 평가비율 90 : 10)

- 개요 : 제안서 평가 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이때 기술능력 평가의 비율은 90%로 정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62호) 제4조·제7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3호, 2014.2.5)제5장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안전행정부고시 제2013-36호) 제18조
 적용대상 :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적용한 사업

- 발주기관 준수사항 : 제안요청서 작성시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90%를 적용

- 법적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안전행정부고시 제2013-36호, 2013.8.27., 일부개정)

제18조(평가배점)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배점한도를 80점으로 할 수 있다.

1. 추정가격 중 하드웨어의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
2. 추정가격이 1억 미만인 개발사업
3. 그 밖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 유의사항

-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3호, 2014.2.5)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따라, 제안서의 평가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1>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 ② 불필요한 개선권고, 통지 등의 예방차원에서 상기 지침에 따라 80:20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추정가격 중 하드웨어비중이 50%이상 등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 제안요청서(RFP) 작성 사례

-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10) SW기술성 평가기준 준용

- 개요 :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 및 상용소프트웨어 선정을 위하여 최신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을 준용하여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4항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62호) 제7조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45호) 제1조 ~ 제4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안전행정부고시 제2013-36호) 제21조
- 적용대상 : 상용소프트웨어 도입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소프트웨어사업

- 발주기관 준수사항 : 최신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고시를 기준으로 SW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기준을 정하고 이를 제안요청서에 명기. 단, “품질보증” 평가항목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상생협력” 평가항목은 반드시 포함.

● 법적근거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45호, 2013.9.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구매를 통해 활용하는 패키지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포함한다)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전략계획수립 및 IT컨설팅, 개발 및 구축, 운영·유지보수 등)의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제2조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2조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상용소프트웨어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평가방법 등)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구매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요구분석에 의거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평가항목 중에서 적정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적격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③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벤치마크테스트(BMT) 등 객관적인 시험인증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하거나,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안전행정부고시 제2013-36호, 2013.8.27., 일부개정)

제21조(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 기술평가 시 품질 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제1항의 기준 중 "품질보증"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 중 "상생협력" 평가항목은 별표1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RFP) 작성 사례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45호, 2013.9.6) 준용

11)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 **개요** :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56호) 제52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안전행정부고시 제2013-36호) 제41조

- **발주기관 준수사항** : 제안요청서 작성 시 작업장소 등의 상호협의 결정을 명시하고,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경우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에 대해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 여부를 명시

- **유의사항**

- ① 향후 기술협상등의 과정에서 상호협의하여 발주기관 사업장에 작업장소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경우 작업장소 이외에도 설비, 기타 작업환경에 대한 제공여부 및 비용부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협의해야 함.
* 정보시스템 운영과 같이 정보시스템의 위치에 따라 작업장소 등이 결정되는 사업의 경우 포함
- ② 국가기관등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국가기관등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향후 협상이나 사업 이행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 **법적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안전행정부고시 제2013-36호, 2013.8.27., 일부개정)

- 제41조(작업장소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과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② 행정기관등의 장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 ③ 제2항의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 작성시 다음 각 호의 근거에 따라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계상한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1조제3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비(지급임차료)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에서 정의된 직접경비(현장운영비)
- ④ 사업자는 당해 계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⑤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제4항에서 정하는 작업장소 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를 정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RFP) 작성 사례**

-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단,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자가 구비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2) 계약목적물의 지재권 귀속

- 개요 : 당해 계약으로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 간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56호) 제56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36호) 제60조
- 적용대상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이 발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 예외사항 :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 발주기관 귀속 시 정당한 귀속사유 명시 혹은 계약당사자에게 개작권 부여

- 발주기관 준수사항 : 제안요청서 작성과 입찰공고 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 당사자간 공동 소유로 한다고 명시하고 사업관리 시 준수

- 법적근거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56호, 2014.1.10)

-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 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⑥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 제안요청서(RFP) 작성 사례

- 용역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OOO”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유형적 발생품, 각종 보고서 판권 등 일체의 성과품은 “갑”의 소유이며, “을”은 본 계약의 목적물(프로그램 등)에 대한 개작권을 사용할 수 있다.

13) 제안서 보상 명시

- **개요** : 20억원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 결과 우수자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 보상이 가능하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1조,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47호, 2013.9.6) 제2조·제3조·제5조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16호) 제5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안전행정부고시 제2013-36호) 제12조
- 적용대상 : 20억원 이상 소프트웨어사업
- 예외사항 : 유지보수사업, 단순 하드웨어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및 시스템운용환경구축사업은 제외

- **발주기관 준수사항** : 총 사업예산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체결 시 제안서 보상규정을 검토하여 '우수 제안서에 대해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 여부 명시

- **유의사항**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은 제안서에 대해 무단으로 활용할 경우 저작권법의 침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술협상 등의 과정에 활용은 지양하도록 함.
다만, 제안서 보상을 한 제안서에 대해 발주기관은 제안자의 동의없이 활용 가능함.

-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47호, 2013.9.6., 일부개정)

제2조(제안서 보상대상 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등의 장 (이하 "국가 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이 제안서 작성비를 보상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총 사업예산이 20억원 이상인 SW사업(단, 유지보수사업, 단순 하드웨어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 사업 및 시스템운용환경구축사업은 제외)에 한한다.

제5조(보상기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보상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이 경우 제안서 보상비의 총 규모는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2인인 경우 :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13분의 8, 13분의 5를 각각 지급
2.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1인인 경우 :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3분의 5를 지급

- **제안요청서(RFP) 작성 사례**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1조,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47호) 제2조·제3조·제5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16호)제5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 결과 우수자에 대해 예산범위내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이나 관련예산 미확보 등으로 제안서 보상규정 미적용

○ 제안서 보상 : 해당사항 없음

14) 무상유지보수 용어금지

- 개요 : 유지보수는 무상으로 요구할 수 없음에 따라 무상유지보수를 명기하지 않는다.
- 발주기관 준수사항 : 제안요청서 작성 시 유지관리와 하자보수를 명확히 구분하고 하자보수는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담보책임이 있으나 유지관리는 검수 또는 설치 확인 직후 별도 계약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명기

● 유의사항

- ①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한 하자, 과업내용서상에 반영되지 않는 기능개선, 사용방법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의 경우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에 해당하므로 무상하자보수로 요구할 수 없음.
- ② 하자보수가 아닌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호4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체결 해야 하므로 “인수직후 계약체결” 문구를 명시해야 함.
- ③ “유지보수” 용어는 위기관리대책회의(2012.06, 상용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에 따라 “유지관리” 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므로 제안요청서상에서는 “유지관리” 용어를 적용하도록 함.

● 법적근거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56호)

-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0조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부대책 주요내용

위기관리대책회의(2012.6.26, 제22차)

상용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

- ① 용역계약일반조건상 유지관리 항목*은 검수 또는 설치확인 직후 계약체결
* 과업내용의 기능개선, 사용방법 개선 요구사항 추가, 하자보수기간 이후 하자
- ② 수·발주자간 계약 직후 원·하도급자간 유지관리 계약체결, 발주기관의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가지급여부 확인
- ③ 유지보수와 하자보수의 용어 혼재사용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유지관리’ 로 명칭 변경

15) 특정규격 명시금지

- **개요** : 소프트웨어 도입 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및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156호) 제5조제4항제5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4호, 2014.2.5) 제1장
- 적용대상 : 소프트웨어 도입이 포함된 사업

- **발주기관 준수사항** : 입찰공고 시 특정상표, 규격, 모델을 지정하지 않아야 하며, 물품 납품 시에도 특정상표,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납품을 거부할 수 없음

- **법적근거**

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56호, 2014.1.10)

제2장 제한경쟁입찰의 운용

제5조(제한기준)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74호, 2014.2.5., 일부개정)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칙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계약시 금지해야 할 사항

- 7) 입찰공고나 설계서·규격서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특정규격 명시 점검항목**

- 특정업체명, 모델명 명시
예) Windows, Oracle, MS Office 등
- 특정제품에서 가능한 사양
예) RAC(오라클 지원 기능) 지원
- 특정제품만 가능한 성능, 품질
예) 개발언어 ASP (Windows OS 기반의 IIS만 지원 가능함), Veritest 인증제품 등

16) 적정기간 산정

- **개요** : 소프트웨어 도입 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및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16호, 2014.2.14) 제4조의2
- 적용대상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 * 단,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컨설팅(정보전략계획수립(ISP), 업무재설계(BRP) 등), 운영·유지관리, SW기반 구축 사업 등은 제외

- **발주기관 준수사항**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고시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SW개발 사업의 적정기간을 산정하고,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이 명시되어 있으면 준수한 것으로 판단

- **법적근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의 합리화)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사업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16호, 2014.02.14.)

제4조의2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활용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국가기관등의 소속공무원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특정규격 명시 점검항목**

- 홈페이지 개발의 경우 규모 산정을 기능점수(FP)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M/M단가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본 제도의 적용대상임

정보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정보센터” 에서 SW산업관련 법령·고시와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관계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가정보화 기본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W산업관련고시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84호)
-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47호)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16호)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개정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200호)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45호)

● 매뉴얼·가이드라인 및 기타

-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
-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매뉴얼
-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사업 분리발주 매뉴얼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가이드
- 법제도 적용 FAQ
-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상세화 적용 RFP사례 등



SW수발주제도상담센터

대표번호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02-2141-5252)

상담안내 : SW사업관련 법제도 상담